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껌베이스에 사용된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 해동하여 유통되는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해동일로부터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등 현행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식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안을 살펴 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 1. 주요 내용

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제품의 글자크기 규정 보완(안 제5조제6호)

- (1) OEM 수입식품에 제품명의 1/2이상으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할 때 포장지 면적의 제한으로 글자크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2) OEM 수입식품에 대한 “위탁생산제품” 표시 글자크기를 제품명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에 따라 차별을 두어 표시
- (3) 표시기준 적용의 융통성 부여 및 업계의 자유로운 산업활동 기대

나.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안 제6조제1호가목 및 안 별지 1 제2호다목2)사)

- (1) 냉동 빵류 및 젓갈류를 제조업소에서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가 행정예고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표시기준 보완 필요
- (2) 냉동 빵류 및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는 제품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해동 후 유통기한(냉동제품의 유통기한 이내), 해동 후 보관방법, 주의문구 등을 표시
- (3)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다. 페놀수지 등 기구·용기 등에 주의사항 표시(안 제6조제3호 다목)

(1)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전자렌지에 사용할 경우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할 수 있음

(2)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 가열·조리시 전자렌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문구 표시

(3) 주의사항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건강 보호

라. 유리제 기구에 주의사항 표시(안 제6조제3호 다목 및 안 별지 1 제1호다목2)다))

(1) 유리제 기구를 가열하는 경우 파열 등 오사용에 따른 피해 발생

(2) 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렌지용, 열탕용으로 표시하고, 그 밖의 유리제 기구는 가열조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

(3) 가열조리용 유리제 기구의 오사용을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

마. 착향료만을 사용한 제품에 이미지 사용금지 표시 개정(안 제7조제3호 및 별지 1 제1호가목1)다)(3))

(1) 착향료만으로 맛을 낸 제품에 해당 원료의 이미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원료가 제품에 실제로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2) 천연착향료를 포함하여 착향료만으로 해당 원재료의 맛 또는 향을 낸 제품에는 그 맛이나 향을 뜻하는 원료의 이미지를 사용 금지하고 착향료 사용여부를 제품명 옆이나 아래에 표시 의무화

(3)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바. 식품등의 표시사항 스티커 사용 범위 확대(안 별지 1 제1호가목2))

(1)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의 수정할 때에도 스티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민원 불편 야기

(2)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는 관할 허가·신고 관청의 승인 없이 스티커 사용 가능

(3) 식품업계의 포장지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절감 및 관련 민원제도 개선

사.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삭제(안 제9조제3호 및 별지 5)

(1)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07.12.27),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을 삭제할 필요

(2)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 삭제

아.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기준 완화(안 별지 1 제1호가목3))

(1) 식품소분·판매업소 및 유통전문판매업소는 대부분이 영세업소이므로 소재지 변경이 잦으며 소재지 변경에 따른 스티커 처리시 관할 신고관청의 승인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민원 불편 초래

(2) 식품소분·판매업소 및 유통전문판매업소는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를 표시 있도록 함

(3) 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 해소 기대

자. 원재료명 표시 중 식품첨가물 표시 개선(안 별지 1 제1호가목7)나(2) 및 별지 1 제1호가목7)나(3))

(1) 천연첨가물은 간략명 표시가 없어 표시에 대한 융통성 부족

(2) 천연첨가물의 간략명칭을 마련하고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로 표시하는 식품첨가물 표시 기준 재정비

(3) 식품영업자의 원활한 표시기준 적용 기대

차. 껌베이스 표시기준 개정(안 별지 1 제1호가목7)다(5))

(1) 현행 기준에 따라 껌베이스의 원료를 모두 “껌베이스”로 표시하는 경우 산화방지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껌의 물성 등을 부여할 수 있는 일부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만 “껌기초제”로 일괄 표시

(3) 원재료명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카. 식품첨가물의 제품명 표시기준 개정(안 별지 1 제1호나목1))

(1) 천연첨가물의 제품명을 고시한 명칭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친숙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명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2) 식품첨가물의 제품명은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고시한 명칭으로 사용

(3)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식품 및 식품첨가물(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은 주표시면 제품명 주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함께 위탁생산제품임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자크기는 제품명 활자크기 1/2 이상 또는 주표시면 면적별 활자크기로 한다.

“원산지 : 국명 (위탁생산제품)”, “국명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 : 국명 (위탁생산)”, “국명 산 (위탁생산)”, “원산지 : 국명 (OEM)” 또는 “국명 산 (OEM)”

제6조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빵류 및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제6조제3호다목 중 “폴리스티렌 및 멜라민수지 재질”을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신설한다.

라. 가열조리용 유리제 식기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표시 방법〉

주 표시면 면적	활자크기(포인트)
35㎢ 이하	12 이상
36㎢ 이상 99㎢ 이하	16 이상
100㎢ 이상 199㎢ 이하	24 이상
200㎢ 이상 449㎢ 이하	30 이상
450㎢ 이상	36 이상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식기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

제7조제3호 중 "합성착향료"를 "실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착향료"로 하고, 제8조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조제3호를 삭제한다.

라.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

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별지 1 제1호가목1)다)(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실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착향료만을 사용하여 해당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낸 제품의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12포인트 이상(제품명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으로 "합성(천연)OO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천연)착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시)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별지 1 제1호가목3)가)(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소분·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업의 업소명(수입식품의 경우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다.

별지 1 제1호가목7)나) 중 (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고, 같은 목 7)나)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7)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표 5]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규정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 6]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규정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이나 간략명 또는 주용도(중복된 사용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주요 목적을 주용도로 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 6]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제1호가목7)다)(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껌 베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에스테르검, 폴리부텐, 폴리이소부틸렌, 초산비닐수지, 클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탄산칼슘, 석유왁스, 천연검, 탭크, 트리아세틴은 "껌기초제"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의 명칭란 및 용도란 변경〉

“ 카르민	합성착색료	“를	“ 카르민 β-카로틴 동클로로필린칼륨 β-아포-8'-카로티날	합성착색료	“으로,
“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발색용은 발색제로, 보존용은 “합성 보존료로 한다	“를	“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발색용은 발색제로, 보존용은 “합성 보존료로 한다	“로 한다.

별지 1 제1호나목1) 중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하고, 같은 목 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조연월일 이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경우, 유통기한의 표시는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5)을 준용한다.

별지 1 제1호다목2)나)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렌지용, 열탕용으로 구분 표시

별지 1 제2호다목2)나) 중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을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하고, 같은 목 2)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조업체가 냉동제품인 빵류 및 젓갈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해동 후 유통기한(냉동제품의 유통기한 이내), 해동 후 보관방법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5 및 표 3을 각각 삭제한다.

표 5를 표 6으로 하고, 표 5를 별지와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5』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표시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등(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과 이와 동일한 식품등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0년 11월 30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